

영등포구의회
제209회 제1차 정례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18. 9. 14.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崔 光 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3호로 2018년 8월 31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8년 9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향상과 편익증진을 위해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291호, 2017.12.26.공포, 2018.1.1.시행)됨에 따라, 납세자보호관 선발기준, 업무처리 방법 및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납세자보호관의 배치, 자격기준, 업무, 권한을 정함(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 나.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대상, 신청 및 처리 기간 등에 관한 규정(안 제6조부터 제14조까지)
- 다. 세무조사 기간 연장·연기 신청 및 결정기간 등에 관한 규정

(안 제15조부터 제16조까지)

라. 권리보호요청 대상, 요청 및 처리기간 등에 관한 규정

(안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마. 납세자권리헌장 제·개정, 제도개선 과제발굴 등에 관한 규정

(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바. 기한의 연장, 가산세의 감면, 징수유예 등의 신청·결정에
관한 규정(안 제24조부터 제30조까지)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세기본법」 및 같은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원안동의

라. 입법예고(2018.7.19.~8.8. / 20일간)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이 제정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제7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51조의 2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성공적 정착과 납세자 권리보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서 총30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됨

○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 안 제1조부터 안 제5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납세자보호관의 배치, 자격기준, 업무범위, 권한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6조부터 안 제14조에서는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대상, 신청절차, 처리기간, 처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고,
- 안 제15조부터 안 제16조에서는 세무조사 기간 연장, 연기 신청 및 결정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하였고,
- 안 제17조부터 안 제20조에서는 권리보호요청 대상, 요청 절차 및 처리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 안 제21조부터 안 제23조에서는 납세자권리헌장 제·개정, 제도개선 과제발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24조부터 안 제30조에서는 기한의 연장, 가산세의 감면, 징수유예 등의 신청방법 및 결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검토결과,

본 제정 조례안은, 임의규정이던 납세자보호관 설치가 강행규정으로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납세자 보호관의 선발기준, 업무, 권한 등을 조례로 규정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이 강화되고
지방세 처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참 고 자 료

1 지방세기본법

제77조(납세자 권리보호)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무를 수행할 때 납세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자격·권한 등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7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88조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에 관한 사항
2.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에 관한 사항
3. 「지방세징수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체납자의 체납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4.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5.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그 밖의 중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1조의2(납세자보호관의 업무·권한·자격 등) ① 법 제7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납세자 권리보호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에 관한 사항
2.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에 관한 사항
3. 납세자권리현장 준수 등에 관한 사항
4.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연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납세자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납세자보호관이 제1항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한 권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시정요구
2. 위법·부당한 세무조사의 일시중지 요구 및 중지 요구
3. 위법·부당한 처분이 행하여 질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처분 절차의 일시중지 요구
4. 그 밖에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또는 조세·법률·회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사람 중에서 그 직급 또는 경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의 납세자 권리보호 업무 추진 실적을 법 제149조에 따른 통계자료의 공개시기 및 방법에 준하여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방법, 그 밖의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